(개정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. 난임치료휴가

휴가일수 확대 / 비밀유지의무

- **휴가일수: 연간 3일(최초 1일 유급) →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)**
- **난임치료휴가 사실 누설 금지**
- **유급분 고용보험 지원(우선지원대상기업): 0일 → 2일**

현 행	개 정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**3일**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**1일**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	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**6일**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**2일**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	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	고용보험법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3.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.